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3년 10월 1일

신한 BNPP 개인용 MMF 제 2호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 2.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개인용 MMF 제 2호 <신설>	제 1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개인용 MMF 제 2호 종류 C 종류 C-p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라. <생략> 나. 특수형태 : 폐쇄사할 없음	제1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라. <항행과 같음> 나.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종류를 발행하는 투자신탁)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 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개인용 MMF 제 2호 <신설>	제 2부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신한 BNPP 개인용 MMF 제 2호 종류 C 종류 C-p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개인용), 개방형, 추가형 <신설>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단기금융(MMF)(개인용),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 C 종류 C-p 나. 종류형 구조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 종류 C-p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2부 11. 매입 및 판매 기준	제2부 11. 매입 및 판매 기준 가. 매입 (1) <생략> <신설>	제2부 11. 매입 및 판매 기준 가. 매입 (1) <항행과 같음> (2) 종류별 가입자격 - 종류 C: 가입제한 없음,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종류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영급취급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 종류 C-p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종류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개시 (기준일: 2013년 8월 31일)
2.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최근현황개시 (기준일: 직전 회계연도)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개시 (기준일: 2013년 8월 31일)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① 채권 및 기업어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증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투자제한 3.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융증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① 채권 및 기업어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증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 다만, 환매조건부채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투자제한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유동성을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채수 (1) 만기 30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외국의 상황을 보충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 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서신설>	②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 이상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함이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3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3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른 것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용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삭제></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용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③연기수익자총회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0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생략> 2. 신계약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계약기간의 변경(신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 및 연금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현행과 같음> 2. 신계약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계약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 주된 투자신탁재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 및 연금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4)반대매수청구권</p>	<p>(4)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항에 따른 신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도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배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4)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배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항에 따른 신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배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배수를 청구하는 경우</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정기보고서</p>	<p>(2)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신설)으로 표시한 경우</p>	<p>(2)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p>	<p>(1) 신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계약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계약자와 변경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2. <생략> 3. 신계약기간의 변경(신설)</p>	<p>(1) 신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계약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계약자와 변경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2. <생략> 3. 신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계약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p>
<p>3.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수시공시</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권력관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변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임원의 임명,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변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현행과 같음)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내용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 의결권공시대상변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2.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가. 종류별 가입자력에 관한 사항 <신설></p>	<p>제2부 11. 매입 및 판매 기준 가. 종류별 가입자력에 관한 사항 종류 C 종류 C-p</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p>	<p>제2부 1. 보수 및 수수료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 종류 C-p</p>
<p>2.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1부 5. 투자운용금액에 관한 사항</p>	<p>제1부 5. 운용전문인력</p>	<p>제1부 5. 운용전문인력 최근업황정신(기준일: 2013년 8월 31일)</p>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 (1) 기재사항 변경
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6. <생략> <신설></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종류형"이라 함은 법 제231조 규정에 의한 판매보수의 차이를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p>	<p>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생략> ② 1.-4. <생략>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p>	<p>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1.-4. <현행과 같음> 5.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에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류 C 수익증권 투자자력 제한유형 종류 C-p 수익증권 투자자력: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p>	<p>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의 가액(이하 "신탁원본액"이라 한다)은 1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공고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로 한다.</p>	<p>제6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신탁원본의 가액(이하 "신탁원본액"이라 한다)은 1회당 1원을 기준으로 제30조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공고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증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조로 한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7조(투자신탁)</p>	<p>제7조(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며, 관련 절차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조(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증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며, 관련 절차는 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8조(신탁금의 납입)</p>	<p>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과 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과 수로 최초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제8조(신탁금의 납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과 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과 수로 최초설정시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9조(수익권의 분할)</p>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황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p>	<p>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종류별로 1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증의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황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종류 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계약 체결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영의인으로 하여 기형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②~④ <생략> <신설></p>	<p>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계약 체결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영의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1에 해당하는 기형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클래스 C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25조(판매가격)</p>	<p>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 <생략></p>	<p>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p>	<p>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회차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원 단위로 유효한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유효한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며,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원을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p>	<p>제30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산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회차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원 단위로 유효한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유효한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며,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원을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p>	<p>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② <생략> <신설></p>	<p>제32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② <생략> ③ 회계감사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33조(이익분배)</p>	<p>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생략></p>	<p>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37조(수익자총회)</p>	<p>제37조(수익자 총회) ①~② <생략> <신설> ③~⑥ <생략> <신설></p>	<p>제37조(수익자 총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회차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 회차수"로 본다.</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39조(보수)</p>	<p>제39조(보수)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1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0] <신설></p>	<p>제39조(보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별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 아니된다. 1. 종류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1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0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0] 2. 종류 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1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9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0]</p>
<p>1. 종류형으로 변경 및 클래스 신설: 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p>	<p>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생략> <신설></p>	<p>제42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2. 특정 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성이라고 판단되는 비용</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6. <생략> <신설> 7.-8. <생략></p>	<p>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6. <현행과 같음> 7. 전자간기사채 등 8.-9. <현행과 같음></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 1.-2. <생략>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자금융증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4.-10. <생략></p>	<p>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① 1.-2. <현행과 같음> 3.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자금증권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채권 (1) 만기 30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주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신행 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4.-10. <현행과 같음></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22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3항</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③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외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37조 (수익자총회)</p>	<p>제37조 (수익자총회) ①~⑤(생략) ⑥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간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p>	<p>제37조 (수익자총회) ①~⑤(현행과 같음)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요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른 것</p> <p>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⑨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본다.</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p>	<p>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④ (생략)</p>	<p>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④ (현행과 같음)</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p>	<p>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생략>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신설) 4. <생략></p>	<p>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47조 (투자신탁의 합병)</p>	<p>제47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 (생략)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제47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간단한 거래일시를 예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제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3.08.29) :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④(생략)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현행과 같음></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p>